<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 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 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 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 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 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 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135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10.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2.20.

스나쿠 가맹본부 주식회사 **디디씨에프엔비**

snacku.imweb.me ddcfnb@naver.com





정보공개서

㈜디디씨에프앤비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DDC F&B INC.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 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 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١.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3 |
|-------|--|---|
| II.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7 |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 0 |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1 | 1 |
| ۷.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1 | 7 |
|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0 |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 2 |
|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5 |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7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 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 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 SNACKU(스나쿠)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04, 101호 | | | | |
| ㈜디디씨 | 법인 설립등기일 |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 | 대표팩스번호 |
| 에프앤비 | 2024.03.22. | | 2024.04.04. | 이명석 | 010-2726-6019 | | - |
| | 법인등록번호 18011 | | 1-1553668 사업자등록번호 132 | | -88-03165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 주 | 소 | |
|--------|------------------------|-----------------|------|----------------|--------|--------|---------------|
| | | | 부산광약 | ᅾ시 금정 | J구 금정호 | 로 52번길 | 45, 101, 102호 |
| 01.01 | 최준영/ 임원 SNACKU(스나쿠) | SNACKU (스나쿠) | 대표 | E자 | 대표전 | 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임권 | | | 최준 | - 영 | 비공 | 가 | - |
| | 법인등록번호 | - | | 사업자 | 등록번호 | 65 | 6-19-01819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 인수・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합병일 | 주 소 | 대표자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 스나쿠 | SNACKU (스나쿠) | 2024.09.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52번길 45, 101, 102호 | 최준영 |

※ 당사가 인수한 가맹사업은 당사의 임원이 운영하고 있던 스나쿠 부산대점으로, 법 인인 당사가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SNACKU(스나쿠)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명 칭 | SNACKU(스나쿠) | 일본식 데일리 푸드 브랜드 |
| 상 호 | 스나쿠 OO점 | 글근국 네멀니 ㅜ프 프랜드 |
| 상표(서비스표) | SNACKU | 상표 출원 (심사중)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 | | | | |
|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 당사는 2024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근단어구 | 건어구 기능 | | 기간 | 소속/직위 | 담당 업무 | |
| | 이명석 | 대표이사 | 2019.08. ~ 현재 | 리오네 / 대표 | 사업 총괄 | |
| | 시원식 | 니표이지 | 2024.03. ~ 현재 | ㈜디디씨에프앤비 / 대표 | 사업 총괄 | |
| 가맹사업 | 최준영 | 사내이사 | 2022.10. ~ 현재 | 스나쿠 / 대표 | 사업 총괄 | |
| 관련 임원 | | | 2024.03. ~ 현재 | ㈜디디씨에프앤비 / 이사 | 운영 총괄 | |
| | 권용석 / | 11110111 | 2016.10. ~ 현재 | 캠클 / 대표 | 사업 총괄 | |
| | | 권용석 사내이사 | 2024.03. ~ 현재 | ㈜디디씨에프앤비 / 이사 | 가맹운영 총괄 | |
|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 장지원 | 감사 | 2024.03. ~ 현재 | ㈜디디씨에프앤비 / 감사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수(명) | 직원수(명) |
|---------------|-----|------|--------|
| 시점 | 상근 | 비상근 | 덕전구(8) |
| 2023년 12월 31일 | 0 | 0 | 0 |

[※] 당사는 2024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임원 | 최준영/ SNACKU(스나쿠) | 가맹사업 경영 |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 | 스나쿠 (등록번호: 20241351)라는 영업표지의 일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
|----------------|------|---------------------|---------------|----------------|-------------|
| スナシク SNACKU | 상표권 | 2023.10.17. 출원 | 4020230186829 | 권용석, 최준영 | - |

※ 상표 출원인은 당사의 임원으로, 상표권설정계약에 따라 당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표권은 출원하였으나,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현재 상표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의 영업표지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귀하 또는 제3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 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SNACKU(스나쿠) 가맹사업 현황

1. [SNACKU(스나쿠)]를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년 10월 1일)

2. [SNACKU(스나쿠)]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스나쿠 | SNACKU (스나쿠) | 최준영 | 가맹사업 예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52번길 45, 101, 102호 |
| ㈜디디씨 에프앤비 | SNACKU (스나쿠) | 이명석 | 가맹사업 예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04, 101호 |

3. [SNACKU(스나쿠)]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SNACKU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스나쿠) | 일식 | 덮밥류, 소바류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SNACKU](스나쿠)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시작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1 | 0 | 1 | 1 | 0 | 1 |
| 서울 | | | | 0 | 0 | 0 | 0 | 0 | 0 |
| 부산 | | | | 1 | 0 | 1 | 1 | 0 | 1 |
| 대구 | | | | 0 | 0 | 0 | 0 | 0 | 0 |
| 인천 | | | | 0 | 0 | 0 | 0 | 0 | 0 |
| 광주 | | | | 0 | 0 | 0 | 0 | 0 | 0 |
| 대전 | | | | 0 | 0 | 0 | 0 | 0 | 0 |
| 울산 | | | | 0 | 0 | 0 | 0 | 0 | 0 |
| 세종 | | | | 0 | 0 | 0 | 0 | 0 | 0 |

| 경기 | 0 | 0 | 0 | 0 | 0 | 0 |
|----|---|---|---|---|---|---|
| 강원 | 0 | 0 | 0 | 0 | 0 | 0 |
| 충북 | 0 | 0 | 0 | 0 | 0 | 0 |
| 충남 | 0 | 0 | 0 | 0 | 0 | 0 |
| 전북 | 0 | 0 | 0 | 0 | 0 | 0 |
| 전남 | 0 | 0 | 0 | 0 | 0 | 0 |
| 경북 | 0 | 0 | 0 | 0 | 0 | 0 |
| 경남 | 0 | 0 | 0 | 0 | 0 | 0 |
| 제주 | 0 | 0 | 0 | 0 | 0 | 0 |

5. **바로 전 3년간 [SNACKU**(스나쿠)] **가맹점 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SNACKU(스나쿠)]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SNACKU(스나쿠)]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SNACKU(스나쿠)]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SNACKU(스나쿠)]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 지점 또는 부서 | 주소 | 전화번호 |
|---------|-------------|--------------|--------------|
| IBK기업은행 | 동래지점 | 부산 금정구 부곡로 1 | 051-517-5780 |

귀하는 가맹금예치신청서(**별점 3)**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 즉시 기업은행에 가맹금을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SNACKU](스나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11,000] | | | | |
| 가입비 | 5,500 | 계약 체결 즉시 | 영업 개시 전 계약 해지 | 영업 개시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 |
| 교육비 | 5,500 | 계약 체결 즉시 | 교육 시작 전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된 경우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
| 총계 | [6,000] | | | |
| 보증금 | 6,000 | 계약 체결 즉시 | 가맹금, 물품대금, 로열티 등 미지급, 공급물품 파손 등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

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17,000 |
| 가입비 | 5,500 |
| 교육비 | 5,500 |
| 보증금 | 6,0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만단위 절사)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99,500 ~ 102,670] | | | | | | |
| 간판 | 가맹본부 | 5,500 | | | 제작 전 계약취소 | |
| 인테리어 (제작테이블 설치 포함) | 자율 | 66,000 | 3,300 | | 공사 전 | 66m²(20평) 기준 |
| 설비 및 기기 (의자 포함) | 협력업체 | 19,930 | 6,039 | 개별계약 | 계약취소 | 냉난방 제외 |
| 주방집기 | 협력업체 자율 | 3,350 ~6,520 | | 별도합의 | 설치 및 | |
| POS | 협력업체 | 대여 (월 비용) | | | 공급 전 계약취소 | 2.영업중의부담 11쪽 참고 |
| 최초 공급 상품 비용 | 가맹본부 | 4,720 | | | 상품 미공급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점포의 여건 및 요구·선택사항, 실제 공급품목 및 용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필요비용은 점포개설 및 가맹계약 전후 견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스압 및 가스가설공사, 통신설비 상하수도 공사, 소방설비, 화장실 냉난방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자율로 진행할 수 있으나,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 제작테이블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리를 실시합니다.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500천원(부가세 별도)을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신규 가맹점 입지에 대하여, 심사 후 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본부 | 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입지 파악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신규 가맹점 개설 심사 → 개설 승인 → 개설 절차 진행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Ē | 르열티 | 가맹본부 | 월 매출액 5.5% | 다음 월 5일 | - | 익월 지급 (후불제) | 브랜드 사용· 관리·운영지원 |
| 광고 | . 분담금 | 가맹본부 | 약 | 정 또는 동의 | 과정에서 정 | 병하는 바에 | 따름 |
| 판결 | · · · · · · · · | 가맹본부 | 약 [:] | 정 또는 동의 | 과정에서 정 | 병하는 바에 | 따름 |
| 드양양광 | 보수 교육 | 가맹본부 | 2,200 | 교육 | 교육 | 교육 | 35쪽 참조 |
| 편 비 | 수시 교육 | 가맹본부 | 별도공지 | 실시 전 | 실시 전 | 실시 후 | 337 GT |
| | 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 가맹본부 분담비용 제외한 나머지 | 별도 약정 32-33쪽 참조 | | | |
| POS | : 사용료 | OK POS | 포스 및 테이블오더 대수에 따라 비용 상이 | 별도 계약 | | | |
| 지 | 연이자 | 가맹본부 | 연10%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 금전지급의무 지급기한 경과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독 항목 | 내 용 | 시기 | 비고 |
|-------|---|----|------------|
| 점포 점검 | 청결·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 | 수시 | 기맹본부 문의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2,200] | | | | |
| 보수 교육 | 2,200 | 교육 시작 전 | 교육 시작 전 계약 해지 | 교육 시작 후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SNACKU(스나쿠)]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SNACKU](스나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 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SNACKU](스나쿠)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SNACKU](스나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SNACKU](스나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 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카라아게동 | 통영장어메밀소바 | | | |
| 점보카라아게동 | 카레한그릇 | | | |
| 치킨난반정식 | 통등심돈가스 | | | |
| 치즈멘치카츠정식 | 고구마치즈코로케 | | | |
| 규동 | 왕새우튀김 | | | |
| 마제카레소바 | 가라아게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 서면 시정요구 2회 | |
| 카라아게카레 | 탄산음료 |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 미시정 시 계약 해지 | |
| 돈카츠카레 | 라무네 | | | |
| 코코넛쉬림프카레 | 메론소다 | | | |
| 대왕에비동 | 한입생맥주 | | | |
| 명란크림우동 | 하이볼 | | | |
| 냉메밀소바 |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 •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고등학교 재학생 | 주류 | 판매할 수 없음 | 서면 시정요구 2회 미시정 시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 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카라아게동 | 11,000 | | |
| 점보카라아게동 | 15,900 | | |
| 치킨난반정식 | 12,000 | | |
| 치즈멘치카츠정식 | 12,900 | | |
| 규동 | 12,900 | | |
| 마제카레소바 | 10,000 | | |
| 카라아게카레 | 11,000 | | |
| 돈카츠카레 | 11,000 | | |
| 코코넛쉬림프카레 | 11,000 | | |
| 대왕에비동 | 15,900 | | |
| 명란크림우동 | 12,900 | | |
| 냉메밀소바 | 8,900 | 홈페이지 및 POS 공지 | 2024. 10. 기준 |
| 통영장어메밀소바 | 17,900 | | |
| 카레한그릇 | 3,000 | | |
| 통등심돈가스 | 3,500 | | |
| 고구마치즈코로케 | 5,000 | | |
| 왕새우튀김 | 3,000 | | |
| 가라아게 | 3,000 | | |
| 탄산음료 | 2,000 | | |
| 라무네 | 4,000 | | |
| 메론소다 | 5,000 | | |
| 한입생맥주 | 3,500 | | |
| 하이볼 | 5,000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6 글인 H 6 H 7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덮밥류, 소바류를 판매하는 업종 | SNACKU(스나쿠) | -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영화관, 대학가 등 특수상권의 경우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와 상호 협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SNACKU(스나쿠)]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SNACKU](스나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
| 2023 | 0% | 0% 100% 0% 0%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SNACKU](스나쿠)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 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 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 D-180 ~ D-90 |

| 예→B, 아니오→® | |
|---|----------|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 계약조문 |
|---|---|----|-------------|
| 0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0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0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 |
| 0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레40조 제1항 |
| 0 | [SNACKU](스나쿠)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
| 0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o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1조 제1항 |
| o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1조 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 | 약조문 |
|--|-----------------------------------|-----|
|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경우 | 개시된 | |
|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
|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생사업을 | |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생본부의 생본부의 | |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기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한다) 등 ¹ 거하여 제41 | |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가장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기 ² . 다만, 반하는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 경우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 약서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 조건 | 환매 절차 | 비고 |
|---|---|------------|
| ○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물품공급 중단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계속가맹금 등 금전지급의무 연체가 없을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 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 가맹본부 문의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IO 양수인이 당사가 장아 가맹작운영 | 가행심사업사가 시년으로 양도 신성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소의 가매보보의 양소 호드 계양 체계 | 가맹본부 문의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 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사실 통지 → 영업을 상속 할 수 없는 사유 검토 → 승인 | 교육으로 및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SNACKU](스나쿠)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가맹본부 문의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SNACKU](스나쿠)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1시 30분 ~ 20시 30분 | 356일 | 가맹본부 |
| (break time : 15시 ~ 17시) | (연중 무휴) | 문의 |

이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3명 | 자율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교육이수자 |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감독 항목 | 감독 절차 | 빈도 및 시기 | 담당팀 | 비고 |
|----------|---|---------|-------------|----|
| 매장 청결 |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 친절도 |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 월1회 | 가맹본부 담당자 | |
| 품질 관리 |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SNACKU(스나쿠)]의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 법령에서 규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광고의 목적 · 횟수 · 시기 ·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당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법령에서 정한 동의를 받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 세부사항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당사는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합니다.

당사는 법령에 의해 동의를 받아 판촉활동을 진행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판촉행사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 세부사항을 고지합니다.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등의 비용,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 팸플릿·전단·리플렛·카탈로그의 제작비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발행비용 등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에 사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26조 및 제2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50일 내외 | [8p~9p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50 |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9~48 | |
| 최종 협의 | - 입지분석 및 심사 - 개설 승인 | D-37~34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3 | |
| 가맹금 예치 |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2(1일) | |
| 점포실측/설계 | - 비용 산출 | D-31~28(3일)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1일)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7~8(23일)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 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 가맹본부 부담 | 가맹본부 부담 | 지급절차 | 비용부담 |
|--|---------|---|--|---|
| 사유 | 비용항목 | 비용비율 | | 제외사유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나 열이나 열이나 열이 등일성의 이나 열이 통일성이나 정이 등의 이 등 | 되는 일체의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공 사 계 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 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 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 |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 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 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 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 |

| | | | <분할지급 시절 지급 사업자 가 생점사업자의 사계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되었다. 이 가 생 수 보기 | |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안전 의 결함으로 인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경우 |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 월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점포의 확장 또 는 이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 | π | n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로 판촉행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본부 부담 | 기매비비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 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가맹본부 문의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SNACKU](스나쿠)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SNACKU](스나쿠)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등 | 실습 등 | 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이전 | 필수 교육 |
| 보수 교육 | 음식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 등 |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 | 계약갱신 시 필수 교육 |
| 수시 교육 |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 실습 등 | 교육일정에 따름 | 연 2회 예정 |

[※] 교육내용 및 일정 등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SNACKU](스나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 시간 |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7일 | 5,5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보수 교육 | 5일 | 2,200 | 계약갱신 시 이수 |
| 수시 교육 | 1일 | 별도 공지 | |

위의 교육 최소시간은 통상 교육시간을 의미하며, 귀하의 숙련도와 교육내용 변경 등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실시 전의 별도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계약서 제20조에 따라 영업개시 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1 | 부산 | SNACKU (스나쿠)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52번길 45, 101,102호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1년 2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263,065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매출액을 근거 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별첨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2]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장 -

[별첨 3] 가맹금 예치 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상호(가맹점명)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
| | 주소(사무소) | | | 전화번호 | | | |
| | 상호(영업표지) | | | | | | |
| 가맹본부 | 성명(대표자) | | | | | | |
| | 주소(사무소) | | | 전화번호 | | | |
| 예치가맹금 | ₩ | (금 | 원 정) | | | | |
| 신청인의 | | | | | | | |
| 계좌 | | | | | | | |
| 가맹본부의 | | | | | | | |
| 계좌 | | | | | | | |
| | | 난 법률」 제6조의5제1 치해 줄 것을 신청합 | | 법 시행령 | 제5조의 | 9제2 | 항에 |
| | | | | | 년 월 | 일 | 일 |
| | | 신청인 | | | (서명 | 또는 | 인) |
| 예치기 | 관의 장 | | | |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귀하

(지점장)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기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4]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구분 | 가맹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